

2023년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종로구에서는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종로 청년창업센터 소개

- 시설명 : 종로 청년창업센터
- 위치 :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 내일빌딩 사옥 5층
- 규모 : 595.0㎡ (전용면적 368.9㎡, 공용면적 226.1㎡)
- 수용인원 : 48명 / 독립형 사무공간(4인실) 6개, 오픈형 사무공간 24석
- 편의시설 : 회의실, 네트워킹 라운지
- 운영시간 : 24시간
- 운영기관 : 종로구청
- 위탁운영기관 : 종로문화재단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자(팀)

- 개인창업자, 법인창업자(대표자로 신청, 비영리 단체 신청 불가)
※ 기창업자는 공고일(2023.11.29.)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만 19세~39세(공고일 기준)의 기업대표 또는 팀대표
 - 법인의 경우 대표자로 신청 가능, 법인(회사)으로 신청 불가
- 서울시민 중 신청 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첨4> 참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타직장가입자 지원 불가(신청기업의 직장가입자는 예외)
- 비영리 단체, 협회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종로구민(신청자) 우대
-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 가족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창업한 경우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기관투자 등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우
-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 우대사항(가산점) 증빙은 합격 후 추후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모집규모 : 개방형 15석

- ※ 현재 남아있는 공석 수이며, 기업당 최대 3석 지원 가능

□ 모집기간 : 2022.11.29.(화) ~ 2022.12.12.(월) ※ 마감일 오전 09: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

- 제출처 : startup.jfac@gmail.com
- 제출서류

	대표자(신청자) 및 공동대표	직원
제출양식	- 신청서(지정양식) - 사업계획서(지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지원

- 입주 지원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별도 입주 연장 심사를 통해 우수 창업자에게는 1년 연장 혜택 제공
 - 입주 부담금 (12개월분 일시 선납)

구분	개방형 (1석 기준)
입주부담금 (관리비, 공공요금 포함)	월 40,000원

- 업무 공간 및 부대시설

	개방형 (1인 사무공간)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7.13㎡ (전용 7.13㎡, 공용 4.43㎡)· 책상, 의자, 사물함 제공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실 2개· 공용 사무기기(복합기, 파쇄기)· 네트워킹 라운지(냉장고, 전자렌지)· 보안 및 통신

□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 세무, 경영 등 수요에 따른 지원
 - 창업 멘토링 : 창업 아이템, 마케팅 등
 - 온라인 투자유치지원, 네트워킹, 창업 교육지원 등
- 기타지원
 - 창업 관련 공모 사업, 정부지원사업, 투자유치 정보 지원
 - 유관기관 및 기업 네트워킹 지원

3. 심사 절차

□ 선정 절차 : 서류 심사(1차), 대면 심사(2차)

- 서류심사(1차)
 - 심사위원 평점 합계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2차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
 - 최종 선정목표의 2배수 내외 선발
- 발표심사(2차)
 - 질의응답(5분)
 - ※ 사업 신청자(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심사위원 평점 합계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 인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심사기준

- 심사기준

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창업자의 사업의지 및 역량,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
시장성	아이템의 독창성 및 경쟁력, 목표시장과 핵심고객 분석 타당성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가능성
사업계획 충실도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및 충실도

- 가점사항

- 사업신청자(대표자)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① 모집공고일(11.29.) 기준 주민등록상 종로구 거주자(10점)
- ②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5점)
- ③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5점)
 - ※ 신청자 명의로 출원 등록 완료된 것만 해당
- ④ 클라우드 펀딩, 엔젤투자 등 투자실적이 있는 자(3점)
 - ※ 지원 동일사업으로 공고일(11.29.) 기준 3년 이내 투자계약서 등의 실적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⑤ BI 지원사업, 창업맞춤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기업(3점)
 - ※ 지원 동일사업으로 공고일(11.29.) 기준 1년 이내 선정 확인서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 신청자(대표자)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합격 후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 항목 중 최고점만 인정(중복인정 불가)

4. 심사 및 입주 일정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허위작성(타인의 명의로나 아이템 도용,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부정표시 등)의 경우 심사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입주계약 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일자까지 해당 공간에 입주하여야 함
-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약서 상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 기창업자는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이전
- 입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부담금 3개월분 선납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동안 진행되는 보육 프로그램을 일정 횟수 이상 참여 및 네트워킹 행사 참석을 해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에 따른 성적 미달자와 운영규정 위반자는 중도 퇴거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 종로문화재단 종로청년창업센터 담당자(02-6203-1164)

<별첨-1>

창업여부 자가 진단

사 례		창업여부	자가진단 (O표시)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조직병경 형태변경 위장창업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 설립된 경우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법인전환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법인전환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폐업 후 재창업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창 업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사업승계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한 경우	사업확장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업종추가	
A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않고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창 업	
A개인이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했지만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경우		사업승계	

<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신규사업장 정의(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별첨-2>

제출서류(합격시 제출)

○ 대표자

구분	예비창업자		창업자				예비재창업자		비고
	1인 단독	팀 대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인 단독	팀 대표	
			1인 단독	공동 대표	1인 단독	공동 대표			
신분증	계약서 작성 시 확인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		●		●		●		●	자율양식
팀창업 계약서		●						●	자율양식
주민등록초본	●	●	●	●	●	●	●	●	민원2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	●	●	●	●	●	●	●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국세완납증명)	●	●	●	●	●	●	●	●	홈택스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	●	●	●	
사업자등록증명 (보유중인 사업자)			●	●	●	●			
폐업사실증명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실적보유시)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원보유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국민건강 보험공단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			

○ 직원 또는 팀원(입주대상자)

- 신분증 앞, 뒤 복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 기준일: 2022년 08월 01일(모든 증명서는 기준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지원자(대표자 또는 팀리더)
 - 팀원(1인 이상), 공동창업자(1인 이상)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창업자: 현재 사업자등록(계속 사업자)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
 - 창업자가 보유한 단일 사업자등록과 다른 아이템으로 지원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거나 새롭게 발급받아 지원 가능
 - 창업자가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여 지원 사업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붙임 참조)
- 예비재창업자: 과거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는 지원자
- 재창업자: 과거 폐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없을 시 운전면허증 및 여권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국세완납증명(개인, 법인): 국세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지방세 납세증명(개인, 법인):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모집마감일 전에 완납하고 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지원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지원 불가
- 공동(동업)창업의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하게 해당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
- 팀창업의 경우 팀원과 관련된 서류 제출

<별첨-4>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 공간(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센터로 사업자 주소지(본점)를 이전할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입주 신청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기타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